

한국관세무역개발원  
평 생 교 육 원

(우)135-816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62-13 8층 TEL : 02) 3416-5068 FAX 02)3416-5077

## 교육비 환불 요청서

업 체 명(교육신청자)			
교육 과정명			
입 금 내 역	입금일자		입금금액
	입금내역		
환불받을 통장 계 좌 번 호	예금자명		
	계좌번호		
	환불금액		
교육취소 사유			
기 타			

- \* 환불을 받으시려면 반드시 환불받을 통장 사본을 팩스로 송부해 주셔야 하며 환급받을 통장의 경우 입금자 명의의 계좌여야 합니다.
- \*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 불참 시 교육 2일 전까지 사전 통보하여 주시고, 교육 1일 전 혹은 무단 불참 시에는 교육비가 환불되지 않습니다.
- \* 고객의 사정으로 교육비 환불을 원하는 경우 계좌이체에 따른 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하게 됩니다.

상기와 같은 내용으로 기 입금한 교육비를 환불 받고자 요청합니다.

신청 일자 : 20 . . .

신청 자 : (인)

## □ 교육비 환불 정책

○ 학습비를 환불 사유가 발생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거 5일 이내 환불한다.

구 분		환불사유 발생일	환불금액
1. 제2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환불사유의 경우		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
2.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 사유에 따른 경우	가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	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전	이미 낸 학습비의 2/3해당액
		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전	이미 낸 학습비의 1/2해당액
		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나기 후	반환하지 않음
	나.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	수업시작 전	이미 낸 학습비 전액
		수업시작 후	환불사유가 발생한 그달의 반환대상 학습비(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
비 고		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 환불금액의 산정은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	